

서울특별시의회  
제306회 임시회  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# 제안설명



2022. 3. 29.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 
김소영

□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!

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민생당 김소영 의원입니다.

□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

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

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□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□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

개정에 따라 전승교육사의 명예보유자 인정 및

전승교육사로의 명칭 변경에 관한 내용을

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□ 또한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

우수한 사람에 대한 시장의 우수 이수자 선정 방법 및 절차와

지원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이

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□ 한편, 동 조례에 따른 보유자, 보유단체, 명예보유자,

전승교육사 및 이수자가 아닌 자가 유사한 명칭을

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,

유사 명칭 사용 금지를 위반한 자에게는

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
□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,

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
서울특별시에서 전승·유지되고 있는 전통문화를  
제대로 계승할 수 있도록  
본 개정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

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,  
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 
감사합니다.